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73 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박성훈・우재준・박충권

김종양 · 서지영 · 곽규택

김대식 · 조배숙 · 임이자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이커머스(E-Commerce)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.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,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.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, 에스크로 업체 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 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 설)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4(거래대금 지급의무)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령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화등의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 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여야 한다.
 -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재화등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의5(거래대금의 예치)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예치기관"이라 한다)에 예치하여야 한다.
 - ② 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

-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경우
- 2.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. 다만,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(이하 "분쟁조정등의 결과"라 한다)가 확정될 때(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,시정조치나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말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까지 거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하고,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.

- 1.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
- 2.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, 조정,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
- 3.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
- 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⑦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 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.
- ⑧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0조의4(거래대금 지급의무) ①
	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수
	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
	화등의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
	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
	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거래
	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
	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
	의 40 이내에서 「은행법」에
	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
	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
	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
	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
	<u>하여야 한다.</u>
	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
	제2항에 따른 거래 대금 및 이
	자를 상품권이나 재화등으로
	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<신 설></u>	제20조의5(거래대금의 예치) ①
	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
	급한 거래 대금을 대통령령으

- 로 정하는 기관(이하 "예치기

 관"이라 한다)에 예치하여야

 한다.
- ② 예치기관의 장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거래 대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- ③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
- 1.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경우
- 2.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. 다만,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통

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공 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 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그 밖 의 분쟁해결의 결과(이하 "분 쟁조정등의 결과"라 한다)가 확정될 때(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, 시정 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 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 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까지 거래 대 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.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 래 대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 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

한다.

- 1.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

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
- 2. 소비자가 거래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, 조정, 중재등을 신청한 경우
- 3. 소비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거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
- ⑥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분쟁조정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거래 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거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① 예치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대금의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소비자

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거래 대금의 예치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